

## **1. 안 건 명**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-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17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- 2011년 11월 22일

## **4. 근거법령**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, 제21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

## [검토보고]

### **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- 동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,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우리구청 주소(소재지)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임

#### 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“「지방 자치법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”로 법률용어를 순화
- (2) 안 제2조에서는 “난지도길 30”을 “월드컵로 212”으로 변경
- (3) 부칙에서는 “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시행일 규정

#### < 검토의견 >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 및 「도로명 주소법」 제21조제3호(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)에 따라 「도로명 주소법」 제19조제1항,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청의 기존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